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33902 보험금

원 고 1. 장OO (97****-1*****)
2. 장OO (01****-3*****)

원고들 주소 울산 **구 **동 **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장OO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식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

송달장소 부산 **구 **동 **

대표이사 지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문탑승, 박재영

변 론 종 결 2011. 5. 27.

판 결 선 고 2011. 6. 17.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망 장OO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망 장OO의 상속인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장OO는 2007. 7. 21.경 피보험자를 망 장OO, 보험기간을 2007. 7. 21.부터 2048. 7. 21.까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 교통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운전자용)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승

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다. 자동차 및 교통수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다. 사고의 발생

(1) 망 장OO는 2009. 10. 9. 20:40경 여수시 **에 있는 **아파트 후문 앞 오르막 도로에서 망 박OO이 주차해 놓은 **호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점검하면서 조수석 맨 뒤바퀴 라이닝이 마모된 것을 발견하였는데, 망 박OO은 확인차 차량 밑으로 들어가고 망 장OO는 차량 뒤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망 박OO이 들어간 곳을 보고 있다가 이 사건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위 차량에 부딪혀 넘어져 조수석 앞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망 장OO는 광주 **구 **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하던 중 2009. 11. 26. 12:10경 사망하였다.

라.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차량의 정비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교통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의 지급은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 등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의 정비와는 무관하여 이 사건 차량이 밀리면서 발생한 운행 중의 사고이고 망 장OO의 수선, 점검, 정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차량의 수선, 점검, 정비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 등을 하는 동안'이 아닌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끝낸 이후이거나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망 장OO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 뒤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차량 밑에 들어간 박OO을 보고 있었을 뿐이어서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 등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9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장OO는 망 박OO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제동장치가 이상하니 점검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기 위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차량은 경사진 오르막길에 주차되어 있었고, 망 장OO는 이 사건 차량의 하부에 들어가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던 중 라이

닝이 마모된 것을 발견한 사실, 망 박OO이 바로 확인차 차량 하부로 들어가자 망 장OO는 이를 뒤에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보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운전자용)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 다항에서는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게 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차량의 수선, 점검, 정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한 것은 그러한 사고가 운행 중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수선, 점검, 정비행위 중에는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자의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사져 있는 지면에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는 차량을 주차시키고 차량을 수선, 점검, 정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밀리거나 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 사건 사고 역시 위와 같은 수선, 점검, 정비 행위의 위험성이 발현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 장OO의 점검, 정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민희